

『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)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5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및 구미 2차 도시 세력권내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의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통한 국토이용 효율화 및 환경보호로 구미시 산업발전 및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코저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을 설치하기 위하여
- 구미 도시관리계획 [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(변경)결정] 을 변경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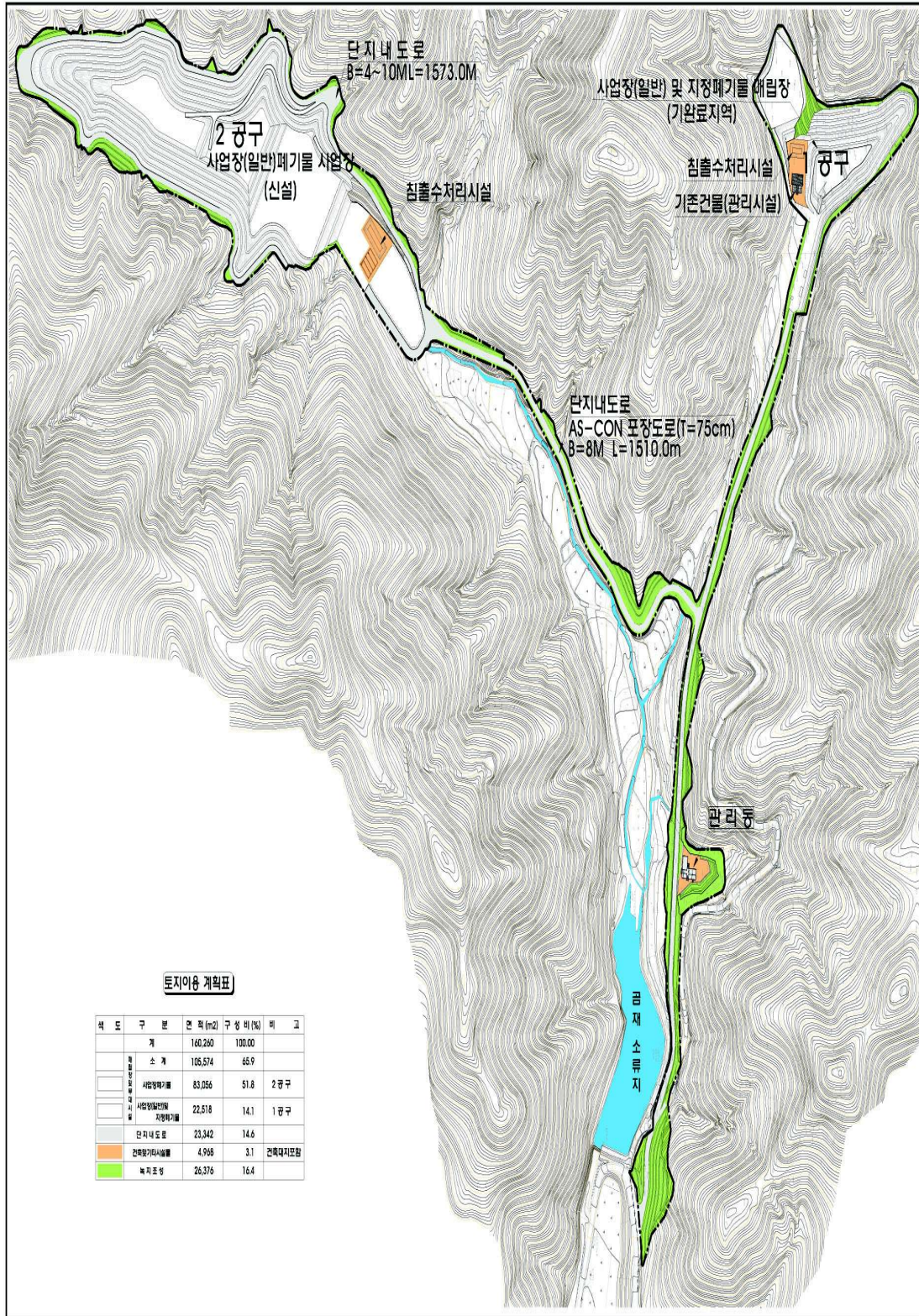
다. 주요내용

- 사업의 명칭 :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조성 공사
- 위 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92-1번지 일원
- 폐기물처리용량
 - 사업장 (지정) 폐기물 : 36,000m³
 - 사업장 (일반) 폐기물 : 1,298,000m³
- 사업 시행자 : (주)케이엠그린 대표이사 김 남 철
- 사 업 기 간 : 2007년 허가일로부터 ~ 2016년 12월 31일
-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
 - 용도지역 변경 : 농림지역, 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
 - 도시계획시설 결정 : 폐기물처리시설 160,260m²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160,260		160,260	100.0	
관 리 지 역	117,006	감)117,006	-	100.0	
계획관리지역	-	증)160,260	160,260	100.0	
농 림 지 역	43,254	감)43,254	-	-	

- 현 황 도 : 붙임

현 황 도



라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 공단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국토이용 효율화 및 환경보호로 우리시의 산업발전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**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**
-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환경기초시설(폐기물 처리시설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따른 침출 수 방류 등 주민생활 피해 예방대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 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폐기물처리시설)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의견서

1. 사업명 : 환경기초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조성 공사
2. 위치 :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92-1번지 일원
3.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
 - 용도지역 변경 : 농림지역, 관리지역 → 계획관리지역
 - 도시계획시설 결정 : 폐기물처리시설 160,260m²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면적 (m ²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 후		
합계	160,260		160,260	100.0	
관리지역	117,006	감)117,006	-	100.0	
계획관리지역	-	증)160,260	160,260	100.0	
농림지역	43,254	감)43,254	-	-	

4. 의견 사항

-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구미 공단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진국형 최첨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국토이용 효율화 및 환경보호로 우리시의 산업발전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하여
-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환경기초시설(폐기물 처리시설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따른 침출수 방류 등 주민생활 피해 예방대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